

2018. 7.20.(금) ~
7.30.(월) / 11일간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1.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 9
8.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원안가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법률 제15292호, 2018. 1. 1. 시행)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기존 10만원이하)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 변경

- 10만원이하 → 20만원이하(납기 : 7.16 ~ 7.31)(안 제14조)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2.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및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
(법률 제15295호, 2018. 1. 1. 시행)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범위와 적용기한 규정,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 및 경감기간 연장 규정(안 제9조)
 - 2017년 12월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한연장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납부 대상 확대(안 제11조)
 - 통장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도 세액공제
대상 추가(세액 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동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관련 조항 정비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 사용된 조문과 용어를 올바르게 개정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서 사용된 약칭 삭제(안 제1조)
- (현행)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 (개정) 장성군, 금고취급금융기관
- 금고운영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12조제1항)
-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 (개정)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4. 장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 부담 경감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공개 활성화 및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 제증명 수수료 요율 변경(안 제3조, 별표 1)

- (현행)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수수료 연도별 1필지당 800원

- (개선)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1필지당 800원

○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 변경(안 제3조, 별표 2)

- (현행) 전산자료(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개선)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5.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2018. 3. 27.신설) 전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안 제3조)

○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심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매각재산의 인도, 대금의 수령, 배분, 청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2조)

○ 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 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6.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복지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마을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장의 임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여 주민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마을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역할을 조례에 명문화
 - 이장의 임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 일본식 한자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
 - 「이를 대표하며 ⇒ 마을을 대표하며」, 「지득한 비밀 ⇒ 알게 된 비밀」,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 ⇒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7.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 범위

· 공간적 범위 : 장성군 진원면(산동리, 학림리) 남면(월정리,삼태리)일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 사업면적 : 3.797km²(개발제한구역 3.258km²)

장성군 : 2.694km²(개발제한구역 2.662km²)

광주광역시 : 1.103km²(개발제한구역 0.596km²)

·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25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8.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적용법령 변경(안 제2조제1호)

- 현행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개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지원』 신설(안 제7조)

-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상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

9.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8. 7. 13.

▪ 제출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 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 기준 변경(안 제20조제1항제3호)

- 현행 「장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안 제20조의2 ~ 3)

- 용도지구의 통·폐합, 신설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2조 ~ 제51조)

-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안 별표 7~10)

-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 허용(안 별표 22)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8. 7. 30.)